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10. 31.(수) 14: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허 욱 부위원장 (1인)

제5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허 욱 부위원장님께서는 국회 일정으로 인해 불참하셨습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5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5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56차 및 제57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5건 및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안건 중 <의결안건 가>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 방송채널 차단 행위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은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의견진술 관련 안건인 <의결안건 가>를 심의한 후, 방송정책국과 이용자정책국 안건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 방송채널 차단 행위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59-534~535)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 방송채널 차단 행위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건은 피심인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조사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방송채널 차단 관련 방송사업자의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티브로드 (주)티브로드 계열 10개 SO, 이하 ‘피심인①’이라 한다),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하 ‘피심인②’라 한다)이 디지털 상품 가입자의 방송 채널 일부를 차단하였고, 8VSB 상품 가입자의 방송 채널 일부를 차단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2018년 3월부터 5월간 사실조사 통지,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였습니다. 피심인 일반현황입니다. 피심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23개 방송구역에서 케이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는 317만명, 방송사업매출액은 5,268억원입니다. 피심인의 본사는 영업조직과의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영업활동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가입자 모집은 고객협력사, 영업전문점, 텔레마케팅센터, 온라인 영업업체 등을 통한 '간접 영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의 채널구성 및 이용요금입니다. 피심인의 이용약관은 방송 상품별 채널 구성 및 이용요금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심인의 의무입니다. 피심인의 이용약관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방송상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피심인의 이용약관은 이용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티브로드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을 제출 받아 티브로드의 방송채널 차단행위와 관련된 민원분석 등을 통해 채널차단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피심인 ①, ②가 필터링 작업을 통하여 방송채널을 차단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피심인 ①, ②가 필터링 작업한 525개 아파트의 방송채널 차단행위에 대해 각 SO별 현장조사 및 민원분석 등을 토대로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입니다. 필터링 작업을 통한 영업행위입니다. 각 SO의 지역사업부, 영업전문점, 고객협력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출입이 용이하고 가입자가 많은 아파트를 선정하고 필터링 작업기간을 정 하였습니다. 필터구매는 지역사업부에서 '도시청 영업확대'의 목적으로 일괄구매 후 작업을 실시하는 영업전문점 또는 고객협력사에 전달하였습니다. 필터링 작업 시 가입자에게 안내할 전단지들 사전에 제작하여 실제 작업 목적과 다르게 '선로점검 및 품질개선'으로 제작 후 안내하였습니다. 가입자의 A/S민원 요청 시 전산시스템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사업부 직원이 현장기사에서 해당민원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상품 가입자 채널 일부 차단입니다. 디지털 상품 가입자 34,027명이 상품종류에 따라 3개 에서 15개 채널이 최소 1, 2시간에서 최대 3일까지 차단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VSB 상품 가입자 채널 일부 차단입니다. 8VSB 상품가입자 2,017명이 상품 종류에 따라 8개에서 62개 채널이 최소 1, 2시간에서 최대 3일 정도 차단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라> 필터링 작업 관련 사전 미고지 행위입니다. 필터링 작업 시 가입자에게 사전 고지한 사례는 없으며, 필터링 작업을 한 가입자 46,731명 모두에게 사후 고지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원 강도에 따른 일부 가입자 차별 행위입니다. 추가 상품 가입에 대한 불만민원을 제기한 98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 강도에 따라 차별적인 할 인율을 적용 후 가입시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바> 필터링 작업 관련 영업실적입니다. 필터링 작업 시작 전 신규가입 영업실적은 1일 평균 16.7건이고, 필터링 작업에 따른 신규 가입 영업실적은 1일 평균 298.4건으로 필터링 작업을 통해 영업실적이 1,691%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수의 시청자 불편 유발입니다. 채널 차단으로 1,895건의 A/S민원이 발생하는 등 시청자의 불편을 유발하였습니다. 1,895건은 피심인 ①, ②의 전산자료 기준으로 확인한 수치이며, 현장 기사의 핸드폰으로 직접 연락한 민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으나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특별히 먼저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의견진술을 요청한 피심인 사업자 측 관계자 의견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티브로드 방송사업자 의견청취>

○ 이효성 위원장

- 지금부터 방송채널 차단 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당사자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티브로드 관계자가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인 입장)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브로드의 방송채널 차단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실태점검 결과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종적으로 방송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과징금 처분 당사자인 티브로드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티브로드 영업본부장이신 이승춘님 맞습니까?

○ 이승춘 ㈜티브로드 영업본부장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티브로드 사업협력실장이신 박정우님 맞습니까?

○ 박정우 ㈜티브로드 사업협력실장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이신 장준영님 맞습니까?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티브로드 측에서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티브로드 이승춘 영업본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춘 ㈜티브로드 영업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저는 티브로드 영업본부장 이승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금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금번 문제를 야기시켰던 불법시청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케이블TV의 전송망의 기술적 특성상 임의 불법시청은 방송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중요한 장애 유발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예전부터 불법시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기존 디지털가입자의 세컨드TV에 대한 8VSB 방송 불법시청을 방지하기 위해 필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사용했던 구형필터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가입된 상품에는 시청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필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날로그 신호를 8VSB 신호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에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확보되었고, 2017년 2월에 저희가 실시된 채널 개편 과정에서 디지털 화질 개선 차원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에 디지털 채널을 재배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장에서는 불법시청 관리를 위한 구형필터가 계속 사용되었고 이를 본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한 채널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반면에 현장에서는 주파수 재배치 사실에 대해서 또는 이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구형필터를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디지털 가입자의 일부 시청누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 본사와 현장 SO 간 내부적이고 상호 의사소통이 세심하지도 못했고 원활하지도 못한 이유로 업무상 실수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따져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업무상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절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당사는 이러한 업무실수로 인한 시청자들의 시청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현재 필터를 통한 불법시청 관리작업을 귀 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사안이 종료되고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인 운영방법이 보완될 때까지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중단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각 지역 SO에 준법교육 강화와 준법서약서 작성 등 자성의 노력은 물론 불법시청 관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지역 기반 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는 현재 전국사업자인 IPTV와의 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입자, 매출액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안이 부정한 의도로 진행된 부분이 아니라는 점 두루 살펴주시고 과징금보다는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하신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금번 사건의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불법시청을 하던 가입자에 대해 적법한 이용관계로 유도하던 과정에서 현장 일선 직원의 실수로 인해 일부 하이채널이 잠시 중단된 행위가 과연 방송법상 공법적 규제로서의 금지행위 요건인 시청자 이익 저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법리적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피심인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을 위반해서 불법시청을 하고 있던 시청자에 대해 영업 방식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상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현장 직원의 실수로 금번 결과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심인 으로서는 불법시청의 정상화가 과연 시청자 이익을 저해시킬 수 있는 행위였는지를 인식하기가 도저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 민원이 제기된 시청자에 대해서 피심인이

즉각적으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였고, 또 중단 기간 같은 경우 최대 1시간에서 최대 3일 정도로 상당히 짧았다는 점을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시청자 이익 저해 여부와 무관한 단순한 실수인 측면이 크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송법상 금지행위와 유사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역시 이용자 이익 저해성이 인정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차례 발생했던 이통사의 현장 직원의 실수로 인해 통신망 장애가 길게는 6시간, 그 규모 역시 모든 서비스, 음성데이터가 차단된 행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는 단순한 현장직원의 실수였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이 고려되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의율된 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도에 KT가 2G라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폐지하던 과정에서 여러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유발되었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역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라는 적법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서 특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의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선례들을 종합해 보면 적법한 목적 하에서 적법한 영업수행 과정에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행위라는 공법적 규제가 아닌 이용약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로, 즉 계약관계에 따라서 피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방송 서비스에 대해서 통신서비스와 동일한 규율 잣대로는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상 시청자 이익이 저해된 행위로 판단하셨던 여러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이번 단순한 실수로 유발된 행위까지 과징금이 수반되는 금지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방금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케이블TV 업계의 저가화 문제 해소를 위해 여러 케이블TV들이 자구책을 세우고 있는데 혹시 그런 자구책 수립에 조금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부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티브로드 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저에게 의사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선 피심인 쪽 의견을 들어 보면 적법한 영업활동의 일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시청을 색출해 내서 정당하게 요금을 내고 보라는 의도로 골라내기 위한 필터를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 이승춘 (주)티브로드 영업본부장

- 예, 맞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거기에 실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통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 이승춘 ㈜티브로드 영업본부장

-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저희가 디지털 대역 쪽에만 디지털 방송 신호를 실었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대역에도 주파수가 확보되어서 아날로그 대역에 디지털 방송채널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치 과정은 고객단에서 채널이 어느 주파수에 배치되었는지는 전혀 상관 없이 시청하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널 배치하는 쪽에서는 기술적으로만 재배치하였을 뿐 그런 것들에 대해 현장의 말단까지 충분히 교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차단되는 구형필터 같은 경우 전혀 상관이 없다가 새로운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에 디지털 방송신호를 올린 것들이 시청 방해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주파수 재배치 부분들이 시청이나 일반적으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그것이 현장까지 그 내용이 상세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과정이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고의성이 없고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변호사님, 현장과 본사 간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돼서, 특히 채널 개편 이전에 필터링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부 채널을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널 개편 이후에 하라고 고지를 내렸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현장과 본사 간 과연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방송서비스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피심인이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업자가 모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특이한 점은 피심인 측에서 수행했던, 특히 특정 사업구역에서 현장 SO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했던 일 자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에 조금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뭔가 불법적, 즉 이용약관에 따르면 세컨드TV 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품이 50% 이상으로 할인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약관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불법시청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상 도시청처럼 몰래 세컨드TV를 보고 있던 가입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가입자에 대해 어떻게 정상적인 이용관계로 유도할까에 대해 각 지역 SO들마다 여러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채널 필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그 자체로 적법한 이용관계로 포섭하기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 서비스 중단이라는 사태가 일어날지는 사전에 전혀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채널 개편 과정에서 기존 8VSB 대역으로 쓰이던 주파수를 디지털 채널로 일부 활용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사전에 어떤 지역에서 그런 필터 작업이 있는지에 대해 조금 명확하게 공유가 되지 않았던 점 때문에 실수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춘 ㈜티브로드 영업본부장

- 보완 설명드리면 만약에 현장에서 그런 필터를 쓰고 있는지 저희가 알았다더라면 디지털 재배치 했던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시청될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하게끔 하거나 만들어 줘서 여전히 계속해서 시청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쓰는 필터의

사용 여부도 정확히 인지를 못했고, 주파수 재배치 사정도 현장에 상세하게 안내하지 못한 결과 이런 과오를 했고, 그 책임은 사업자로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또 하나의 쟁점은 실수든 어떻든 간에 채널시청이 차단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과연 통신서비스 장애로 단순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통신장애가 생겼을 때는 방통위가 제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왜 과징금을 매겼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 사무처에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변호사님이 명쾌하게 주장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위원님 말씀대로 통신장애서비스와 본 건 사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통신사든 방송사든 유료방송사든 모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대리점 이든 영업현장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서 통신사 같은 경우도 현장에 있는 일선의 직원들이 각 지역 네트워크를 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책임이 통신사에도 있고 모든 방송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방송사업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 책임이 어떻게 불이행됐느냐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본사에서 헤드쿼터(Headquarter)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지침을 주거나 계획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 직원의 실수로, 통신네트워크 관리에 있어서 그러한 실수가 발생했다는 점, 특히 이 건도 영업현장 직원의 단순한 실수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본사와 따로 자회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설비 기사는 어디 소속입니까?

○ 이승춘 ㈜티브로드 영업본부장

- 별도 계약에 의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협력사라고 볼 수 있지요?

○ 이승춘 ㈜티브로드 영업본부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관리감독, 만약에 현장에서 본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수로, 본사에서야 일부 채널이 차단되는 것을 원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장 끊고 다른 데로 가버리지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는데 과연 현장 설비기사들이

실수로 어쨌든 채널이 차단되어서 시청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자회사 내지는 협력사, 설비기사의 몫으로 따로 봐야 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위원님,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티브로드가 제공해야 하는 방송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피심인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방송서비스가 3시간 이상 중단됐을 때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들이 다 규정되어 있고, 통신망 장애도 통신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서비스가 일정 시간 이상 중단됐을 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단순한 실수로 뭔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기존 여러 가지 사례에 비추어 보면 계약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방송법상 공법상 규제로서 금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청자 이익 저해성, 방송법 해석을 통해 과연 이러한 행위가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과징금이나 금지행위로서의 제재 처분이 필요한가,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꼼꼼히 살펴봤고 피심인 측 의견도 꼼꼼히 다 봤습니다. 어떤 것은 저희 사무처 의견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도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즉, 사무처에서도 피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상당히 꼼꼼하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이익 침해 고의성 여부, 또 그것으로 인해 사업자 측에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득이 발생했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했느냐, 또 약관 위반으로 단순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보상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방송법상 위반으로 제재와 처분을 할 것이냐, 이런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는 발생했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 이승춘 (주)티브로드 상무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분명히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단순한 불편이 아니고 이용자 이익 침해라는 부분은 동의하시는데 그것이 고의적이냐, 아니냐만 입장이 다른 것 아닙니까?

○ 이승춘 (주)티브로드 상무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는 발생했지만 도시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유료방송시장이 있고, 또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사에서 했든 아니면 협력사가 했든 증거 수집해 온 것을 보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가입하게 되면 몇 대씩 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본사에서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 이승춘 ㈜티브로드 영업본부장

- 전혀 인지를 못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상품에 대해 가입하라고 계속해서 지침을 내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동안 확인을 못 했던 것도 저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를 들어 이번에 필터링 작업하는 과정에서 도시청을 차단하는 것, 도시청이 있었다면 도시청을 차단하는 것은 사업자의 권리라고 봅니다. 당연한 정상적인 영업행위이고요. 그런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가입할 당시에 ‘가입을 하면 몇 대씩 추가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이것을 차단할 때도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내지는 고지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이승춘 ㈜티브로드 영업본부장

- 일단 회사 정책상 임의로 저희가 방송을 추가 설치하는 것들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하기는 분명한 부당 영업행위로 보고 거기에 대한 심지어 그것이 심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까지 될 정도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개별 가입자가 세컨드TV를 임의든 전산상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1개 케이블 회선이 들어가면 디지털 방송 같은 경우 셋톱박스를 통해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한 회선이 들어가서 임의적으로 태내 누군가가 2분배를 쳤다면, 그래서 8VSB 방송을 본다면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말씀드렸드시피 서비스 품질에, 망의 품질이 잘 못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불법시청 관리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세컨드TV를 양성화하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자료로 확인한 필터링 작업을 통한 추가 가입자수 그리고 우리가 입증한 이용료 연관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자료를 보면 채널이 차단된 36,044명중에서 3,223명, 대략 10% 정도로 봐야 합니다. 정확히 9점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추가 가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 이승춘 ㈜티브로드 상무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추가 가입한 것 맞지요? 이분들이 추가로 시청하든 아니면 새로 가입하든 올해 부담하는 평균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 이승춘 ㈜티브로드 영업본부장

- 월 사용료가 세컨드TV 같은 경우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명 가입자면 1,000여 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월에요?

○ 이승춘 ㈜티브로드 상무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영업기술상 이른바 사업자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세컨드TV라고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도 시청을 찾아내서 정상적으로 가입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편인데 고지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도시청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적을 가입자들에게 이야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마치 전혀 다른 목적인 것처럼 가입자들에게 고지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까지 발생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는 가입자들도 일부는 인식할 수 있고 또 가입자들이 전혀 다른 것을 하는 듯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결국 필터 사용도 어느 종류를 쓰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가입자들이 시청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삼석 위원님께서 추가 가입으로 생긴 영업이익이 얼마쯤 되느냐고 물어본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두 분 위원님들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부탁만 드립니다.

○ 이승춘 ㈜티브로드 영업본부장

- 명심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티브로드 측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우 ㈜티브로드 사업협력실장

- 계속 말씀 주신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적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불법시청 단속 필터를 사용했던 것도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불법시청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널 누락에는 절대 의도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꼭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청이 누락된 채널을 보면 특정 대역으로 옮겨진 약 11개 채널입니다.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는 적게는 3개 채널, 많게는 15개 채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채널의 면면을 보면 롯데원TV나 NS슈플러스처럼 티커머스 송출수수료와 연결된 채널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을 본다면 저희가 채널 누락에 의도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저희 사업부에서 필터 사용이 채널 누락을 하지 않는 신형 필터를 사용한 사업부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부는 본사에 있던 직원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주파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채널을 줄였다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꼭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번 조사대상에 수원방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입자가 약 40만 규모인데 저희 위반 규모가 10여건 내외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사는 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필터 관련해서 미흡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회와 협의하면서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잘 개선해서 향후에는 시청자들에게, 저희 가입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견진술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티브로드의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 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진술인 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진술인 퇴장)

이어서 <의견안건 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시정조치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위법성 판단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필터링 작업을 통한 영업행위입니다. 자사 가입자의 불만 민원을 의도적으로 유발시켜 기사 및 콜센터 직원과 상담하는 도중에 영업행위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입자 이익 보호에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사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영업한 행위는 방송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한 행위는 시정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디지털 상품 가입자 채널 일부 차단입니다. 피심인 ①, ②가 필터링 작업을 하여 디지털 상품 가입자 34,027명의 3에서 15개 채널을 차단한 행위는 약관상 제공해야 하는 채널 일부를 차단하여 가입자의 시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방송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이용약관 제12조를 위반하여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VSB 상품 가입자 채널 일부 차단입니다. 피심인 ①, ②가 필터링 작업을 하여 8VSB 상품 가입자 2,017명의 8개에서 62개 채널을 차단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의 채널을 최대 3일까지 차단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이익과 시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방송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이용약관 제12조를 위반하여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터링 작업 관련 사전 미고지 행위입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이용약관 제7조를 위반한 것이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 금지행위 위반사항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이용시설 사용 시 사전 고지하도록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민원 강도에 따른 일부 가입자 차별 행위입니다. 98건의 불만 민원에 대하여 민원 강도별로 정상 요금 가입 32명, 추가 가입 없이 이용 33명, 무상제공 5명, 50% 할인 28명 등 요금을 차별하는 행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약관에 할인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가입자별로 차등 적용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입자 차별 금액과 할인 건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영업담당직원으로부터 추가 방송상품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설명을 듣고 시청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심인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피심인 ①, 피심인②가 이의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 보고 명령,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명령안입니다.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한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채널 일부 차단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방송상품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등 개선 방안 마련,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내용을 방송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자막으로 고지하며 각사의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 시정명령 이행기간 및 고지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입니다.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관련매출액입니다. 관련매출액은 해당 위반행위가 기본채널 일부의 실시간 송출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방송사업매출액 항목 중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으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매출액입니다. 피심인 ①의 관련매출액은 467억 3,195만원입니다. 피심인 ②의 관련매출액은 19억 1,748만원입니다. 부과기준을입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매우중대, 중대, 중대성약함으로 나누어집니다. 본 건의 경우 자사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시장의 왜곡 정도가 적고 피해 가입자 수가 총 가입자 수 대비 약 1%에 그쳤으며, 과거 시청자 이익저해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0.6%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피해 가입자별로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일 정도 채널이 차단되어 차단 기간이 길지 않고 과거 자사가입자 위반행위와 비교하여 피해 가입자 비율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0.3% 적용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수적 조정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은 없으며, 위반 기간에 따라 5개 SO는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10% 가중하고, 5개 SO는 6개월 초과 1년 이내로 20% 가중합니다. 추가적 조

정입니다. 추가적 가중사유는 없으며, 추가적 감경은 피심인 ①, ②가 방송법 및 필터링 작업 관련 금지행위 교육을 통해 자율 준수 프로그램 교육을 완료하여 5% 감경 적용하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 과징금입니다. 기준금액의 추가적·필수적 조정을 거친 결과, 피심인 ①에 1억 5,170만 5,360원을, 피심인 ②에 655만 7,780원을 부과하여 최종 과징금 총 1억 5,826만 3,140원을 부과하는 안입니다. 다음 개선권고(안)입니다. 필터링 작업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고지하도록 권고하고, 영업담당직원으로부터 추가 방송상품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설명을 듣고 시청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권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검토입니다. 금지행위 신설 검토입니다. 자사고객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민원 제기 시 영업행위를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법에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이 단순 실수냐, 의도적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피심인들은 의도성이 없다고 했는데 일단 위원님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시지요.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의결하기 전에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가입자들이 피해를 본 것이 최단 1시간에서 최장 3일까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시간이나, 10시간이나, 하루냐, 사흘이나 가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1일 이내는 얼마 피해를 봤고 2일, 3일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되어 있습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피해 정도의 경중이 가려질 텐데 그 이야기가 없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전체 피해를 본 가입자들, 이용자 가운데 1일 이내는 30%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판단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핵심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이것이 과중하냐, 이것이 핵심 쟁점 같습니다. 피심인들 주장은 고의성이 없다,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불법 도시청을 골라내는 것은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사무처를 저는 믿습니다만 탄탄하게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고의성 부분, 이 사람들은 통신서비스 장애에 불과하다, 예전에 대규모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과징금 없이 갔는데 왜 우리만 과징금을 매기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선 그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논리가 어떻습니까?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제재를 가할 때 고의냐, 과실이나 문제는 핵심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의과실은 형법상 논할 때 고의냐, 과실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을 할 때는 우리가 과징금 액수를 정할 때 고의과실 문제보다는 과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14개월간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채널 변경이 2017년 2월에 일어났고, 실제 2018년 2월까지 조사기간을 했는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티브로드에서 채널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필터링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채널 차단이 일어나지 않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건수가 3만건이 넘습니다. 고의를 입증할 수 없지만 과실 중에서도 큰 과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영업행위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권고로 한 것이 영업하시는 영업기사 분들도 본인, 대리인 관계에서, 티브로드의 대리인으로서 티브로드의 책임으로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저희가 증거를 보고 드렸더니 증거를 통해 구두로 정당하게 세컨드TV를 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소홀한 부분을 저희가 증명은 못 하지만, 또 금지행위 부분도 없지만 저희가 권고를 내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의도 부분은 만약에 정말 도시청을 했던 분들이라면 민원전화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몰래 보고 있는데 민원전화를 왜 하겠습니까? 내가 몰래 보고 있는데 'TV가 끊겼으니까 나오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도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추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 사람들 주장은 또 이용자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성격이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아까 법무법인에서 나온 장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그중에서 나옵시다만 어쨌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공법상의 금지행위는 또 별개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저희가 시정조치(안)에서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관에 따라 당연히 그것은 보상해야 하는 것이고, 약관에 대한 보상은 정전이나 기술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금지행위 위반을 통해 차단된 것을 보상하는 것이고, 저희는 행정청 입장에서 시청자 이익을 저해한 금지행위 위반이기 때문에 또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자사 가입자 대상으로 타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서 타 사업자의 가입자를 뺏어오지 않았다, 내부 일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 것이 반영된 것입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그런 것을 반영해서 중대성 약한 위반행위입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아까 보고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반영되어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반행위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 또 회사 측도 그것은 인정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따질 때 고의성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시정조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8년도 1~2분기 재난방송 미 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2018-59-536~538)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2018년도 1~2분기 재난방송 미 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분기 재난방송 미 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 재난방송 실시 의무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를 <붙임 1>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18년 1분기에서 2분기 정부는 총 117건의 재난방송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분기별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해 왔습니다. 6월 11일 MBC 등 5개 방송사 6건에 대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를 하였고 8월 10일 아리랑라디오 등 2개 방송사 2건에 대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난방송 개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5> 사실조사 대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년도 1분기, 2분기에 기상청, 행정안전부 등은 총 117건의 재난방송을 방송사에 요청하였고, 재난방송 유형별 요청 내용은 호우경보가 37건, 건조경보 21건, 대설경보 16건 등이었습니다. 월별 재난방송 요청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방심위는 모니터링 결과, MBC 등 19개 방송사업자 30건의 재난방송 의무위반 의심 사례를 방통위에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심위 통보

자료에 대한 1차 점검 결과 7개 방송사업자 8건을 재난방송 의무 위반 사실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재난방송 실시 13건, 통보문 오류로 재난방송 실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9건 등 총 22건은 사실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제출 의견은 재난방송 미실시 1건에 대해 한파경보가 밤 10시에 발효되어 다음날 오전 11시에 비교적 일찍 해제되었으며,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인 행사와 삼척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본사 인력이 적시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난방송 실시 미흡 7건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재난지역이 많은 경우 포괄적으로 표시했다는 의견, 그리고 심야 및 주말 녹음방송이 진행되는 시간에 통보문을 수령할 경우 라디오는 다음날 및 평일 아침 첫 생방송시간에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밖에 없어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 등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 의견 및 조사 대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지역 일부누락 및 포괄언급에 대해서는 지역명을 일부 누락하거나 인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지역명을 방송한 경우는 "주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재난상황 해제 후 재난방송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긴급하게 방송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재난상황이 신속하게 끝난 경우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재난상황이 일찍 종료되었고, 다른 행사 등의 사유로 재난방송을 미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방송은 재난 예방·대피·구조·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1건과 관련하여 재난이 일찍 해제되었다거나 다른 행사가 많았다는 사유는 재난방송 실시 예외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며, 그밖에 재난명 및 재난 지역에 관해 구체성이 없거나 다수 지역을 누락한 방송을 송출한 것에 대해서는 재난방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가 자문단에서 주의를 권고한 재난지역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사례 중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상황, 재난상황이 해제된 이후라도 최대한 긴급하게 방송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조치 시행 초기인 점과 직전 제재조치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별 위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8건 중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재난방송 실시 사실을 소명한 TBS 1건은 재난방송 실시를 인정하고, 채널A, 불교방송, 아리랑라디오, 광주 영어방송 등 4건은 '지역명 일부 누락, 인식 가능한 범위의 지역 포괄' 등 재난방송 내용이 일부 미흡하지만 그 위반 수준이 미미하여 "주의" 조치하고,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등 2건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사는 재난방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난지역 중 다수지역을 누락하여 재난방송 의무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외 재난방송을 미실시한 1건에 대해서는 재난방송 의무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방송사업자별 위반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MBC,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등 3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미실시 및 미흡실시 3건은 재난주관기관의 발표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방송으로서 재난방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8조(과태료)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별표]에 따라 <붙임 2>의 위반내역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별표]는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준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1>을 보시면 방송사별 위반건수당 과태료 기준금액인

1,500만원을 곱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과태료 부과(안)를 의결해 주시면 11월 중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과태료 금액은 <붙임 1>에 나와 있는 3개 방송 법인에 대해 1건이기 때문에 1,500만원씩 부과안을 올린 것이지요?

○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전문가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에서 전문가 의견이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분들 말씀이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재난방송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구체성이 없거나 다수지역을 누락한 것은 역시 의무이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쫓았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MBC를 보면 아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불교 방송이나 기독교방송은 실시했는데 미흡하다고 볼 수 있지요?

○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다면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MBC 사정을 보면 피심인 제출 의견에서 특보시간이 만 하루가 채 유지되지 않았다, 밤 10시에 발령이 되어서 한파경보지요. 다음날 오전 11시, 밤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않아서 우리가 미실시해도 별 대수냐, 이런 안이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또 대형 삼척 산불 때문에 인력이 못 미쳤다, 아니 MBC 같이 그렇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인력이 많은 대형 메이저 방송사가 이것을 이렇게 안이하게 의견을 제출한 데 대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너무 대수롭지 않게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영세한 규모로 방송을 꾸려 나가고 있는 다른 지방 중소방송사는 이것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엄청 고생들 하는데 아예 미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교방송, 기독교방송은 실시하기는 했는데 전 지역을 다 일일이

거명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라디오 매체지요?

○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라디오매체는 제가 누누이 재난방송 안전이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만 TV와는 달리 TV는 자막을 한번 흘려보내면 그만입니다. 별도로 인력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라디오매체는 본방송을 끊고서 누가 그것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음악방송 같으면 음악이 중단되고 누가 나와서 생방송으로 재난지역을 다 일일이 호명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늘 주장하면서 제도 개선책을 내놓자, 특히 심야는 주로 녹음방송을 하고 있고 또 인력이 적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거의 다 녹음방송으로 갑니다. 누가 중간에 나와서 방송을 끊고 읽어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체의 특성상 라디오매체에 대해서는 재난방송 개선책을 찾아보라고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잠시 듣고 싶습니다.

○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

- 재난방송 요청 문안 중 행동요령 부분이 상당 부분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디오 방송의 경우에는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안전으로 상정하였고, 그 내용이 지난 6월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 재난 요청문서가 자동으로 통보되는 내용 중에 '라디오방송사는 핵심위주로 간략히 가능'이라는 내용을 넣어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난명 발생지역, 발생일시 등 핵심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가로등, 맨홀 근처에는 가지 마십시오' 이런 행동요령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빠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라디오방송사들에게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불교방송도 보면 TTS 자동으로 인식되어서 바로 방송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대부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수가 없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과태료가 영세한 방송사는 부담됩니다. 우리가 지역방송 중소방송사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불교 방송과 기독교방송은 다르게 적용해서 50% 정도 감경하는 안을 요구합니다. MBC는 아예 미 실시했기 때문에 1,500만원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이 워낙 길게 잘 말씀하셔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딱 한 가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들어서고 나서 재난방송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여러 가지 과태료 처분을 해 왔는데 처음에 위반건수가 많았던 SBS는 싹없어졌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재난방송 위반사업자 안전을 다룰 때 그때도 MBC는 4건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MBC가 재난방송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또 나오는데 MBC만 왜 이런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MBC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만 별도로 강력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제일 큰 공영방송 두 방송사 중 하나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장 체제도 바뀌고 새로 체제를 바꾸어 간다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가중과 감경이 있는데 가중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1건이기 때문에 가중까지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MBC가 정말 크게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혹시 MBC 위반 날짜가 몇 월입니까? 2월입니까? 혹시 MBC가 파업 중이었습니까? 자꾸 인력난을 이야기하는데...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2월 12일 위반 건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파업은 끝났었지요?

○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파업 중이라면 인력이 부족해서 정상 방송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정을 이야기한다면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지만 파업도 종료가 되고 정상적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는 올 초 2월인데 너무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실시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해를 해주기 바람' 이런 식으로 제출의견이 들어왔던데 엄중하게 표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구두라도 이야기하십시오. 방통위에서 너무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이야기하십시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김석진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파업 상황이었다면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고려가 아니라 살펴볼 수 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런 데는 Key사 아닙니까? 파업상황에도 재난방송은 차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불교방송과 기독교방송은 감경, 그리고 MBC는 원안대로 1,500만원, 나머지는 50% 감액하는 것이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750만원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MBC는 1,500만원 나머지 두 방송사는 7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전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수신료 납부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해소 등 수신료 징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과사항입니다. 2014년 12월에 수신료 면제 및 감액 관련 규제 재검토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7년 종합감사에서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너무 높고 수신료 선납할인제의 인지도가 낮아서 활용이 적다는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저희가 국정과제로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정책연구를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수신료 감액제도 고지 강화입니다. 시행령 제45조 수신료 감액제도에 대해서 국민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를 KBS 등이 감액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관련입니다. 제47조에 보면 수신료 체납 시 가산료 비율을 5%로 현행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신료와 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수신료 납부 독촉장에 가산금 부과 근거를 고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수신료 면제절차 간소화 부분입니다. 제44조에 보면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에서 별도의 증빙 없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도 증빙 없이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력사용이 0인 영업장, 난시청 지역 거주자 등 3개 부분의 대상에 해당되는데 이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등까지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상기 미소지자의 과오납 수신료 환급 근거 신설 관련입니다. 제46조에 보면 수상기 등록자의 과오납 수신료에 대한 환급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상기 미소지자에 대한 과오납 수신료에 대해서도 환급 근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입법예고를 40일간 진행하고,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체납가산금 인하도 찬성이고, 수신료 면제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상기 미소지자 수신료 환급 근거를 새로 신설하는 것 다 찬성입니다. 다만, ‘감액제도 고지를 강화한다’는 조항이 눈에 띄는데 수신료를 감액

하는 제도, 어떤 경우에 감액이 됩니까?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저희가 6개월을 선납할 경우에는 한 달치 2,500원의 50%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 안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감액제도입니까?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 하나, KBS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KBS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형 병원이나 수상기가 많은 대형 건물 같은 경우 목돈이 많이 나가니까 감액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많이 절약된다, 제도가 바뀌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실 너도 나도 한꺼번에 감액을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까? 선납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을 KBS는 가뜰이나 수신료가 오르지 않아서 걱정이라던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KBS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저희가 KBS와 EBS에 대해 6회 정도 의견수렴을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부분에서 했고, 시행령에 대해서는 세부 조문 방향에 대해 협의를 했었습니다. 당초 수신료 납부고지서에 이런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자 했으나 한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KBS 의견은 자체적인 홍보를 통해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국민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KBS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홈페이지에는 공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했었고 KBS도 일부 수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렇게 되면 KBS 쪽 주장은 대형 병원은 하지 말고 일반 가정의 시청자들에게만 감액제도를 제한적으로 고지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처에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이 부분은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KBS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검토해서 감액제도가 자칫 전체 수입에 큰 영향을 주면 또 달리 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타당한 것인지, 제한적으로 일반 시청자들 가정에만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여기에 있는 대로 수신료 면제 신청대상도 보다 더 명확하게 폭을 넓혀서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감액제도, 그런데 제도가 있는 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KBS에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어진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만약에 이 제도 자체를 바꿔서 대형 건물이 아니고 일반 개인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꾼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저는 KBS가 나쁘게 말씀드리면 수입이 줄어들까 싶어서 홍보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이 안건에는 원안대로 동의하고 감액제도에 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행령 입법예고하면 또 의견수렴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KBS 입장에서는 수신료 수익의 감소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입장도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이 과정에서 특히 사업자 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페이지에 보면 경과사항에 규제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들이 최근에 시행령이나 고시에 다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상반기에는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올해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방송광고 수탁수수료도 재검토 기간을 넘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있었던 점, 그리고 제4기 방통위 출범이 지연됐던 점 등의 이런 사유로 규제 재검토가 연기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자칫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직무유기 논란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규제 재검토 규정이 있다면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일괄적으로 검토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물론 어떤 조항들은 영향이 크지 않거나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마저도 공식적으로 재검토 논의를 하고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방송과 통신 관련된 시행령이나 고시에 있는 규제 재검토 이런 규정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경식 사무처장

- 알겠습니다. 재검토 규정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 사무처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6-1. 의결사항

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8-59-539)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의결안건 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정책국장이 부위원장을 수행해서 현재 국회 공무 출장 중이라 부득이하게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7월 4일에 고시 전부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한 달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는데 인증위원 구성 방식, 인정기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비규제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증제도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변경하고 영문으로는 ISMS-P로 변경하였습니다. 인증기준으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3개의 영역과 세부 102개 기준으로 통합하였고, 기본 80개 보안항목으로 ISMS 인증을 실시했을 때 추가로 22개 개인정보 항목까지 인증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ISMS-P 인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심사관 요건, 인증·심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일원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방통위·행안부·과기정통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인증기관·심사기관 지정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대상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심사원 요건을 부여하고, 이 경우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기 1년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 이후의 신규 인증·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는 협의회를 통해 진행하고, 3개 부처 공동의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경과 조치입니다. 시행일은 고시 발령일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유효기간까지는 기존 인증제도로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신규 인증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그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 통합 이후 인증·심사를 위해 심사원은 자격전환 절차를 통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보고 후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증위원회의 구성 요건에서 교수, 변호사 등 특정 자격을 삭제하고,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인증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인증위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6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인증심사원의 자격신청 요건과 관련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실무경력 6년은 유지하되, 변호사에 대한 경력 인정 분야를 현행 정보보호·정보기술에서 개인정보보호로 변경하고, 또 정보기술경력과 관련해서는 국가기술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기술사 2년, 기사는 1년의 실무경력을 인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결해 주시면 개정안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합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해 전환교육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 페이지 나중에 수정된 내용이지요? 당초 보고된 내용에서 조금 변경되었다고 하였는데 인증위원회 구성을 교수, 변호사 직업을 특정해서 명시하지 않고 '학식과 경험 있는 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리고 위원장이 인증위원을 지정하도록 하였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6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위원장의 권한을 축소했다, 임명권을 없앴다는 것입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것은 아니고 당초 인증위원회는 전체 풀로 운영되고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매회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위원장과 위원 포함해서 6인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당초 위원장이 지정하던 것에서 인증기관은 KISA, 또는 인증기관이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의미가 인증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위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특정 자격 명시도 삭제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35명 이내로 구성할 때 특정 직업군에 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서 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광범위하게 전문분야 풀(Pool)을 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 변호사에 대한 경력 인정 분야, 이것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변호사는 당초에 정보보호, 정보기술 분야의 경력이 6년이다라고 인정됐었는데 아무래도 정보 보호나 정보기술은 물리적인 시스템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 예고를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로 돌리고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회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나 아니면 법령에 대한 이해도 부분이 추가로 되어야 하고, 그것이 중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거쳐 변경하였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기존 물리적인, 시스템적인 측면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법적 측면이나 제도의 이해 부분에서 경력 인정으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도 제5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57분 폐회 】